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외국어 대한교육기관 등록 허용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16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대안교육기관 등록 허용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21.
3.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외국어 대안교육기관 등록 허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문화학생등의 교육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생략)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u>시설등</u> <단서 신설>	2. ----- ----- <u>시설등</u>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시설등은 제외한다.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²⁾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2025년 9월 기준 총 267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재학생 수는 총 11,772명임.

<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10	7	8	13	11	2	1	7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6	11	12	7	9	267

자료: 교육부, '25.9. 기준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초중(통합)	중·고(통합)	초중고(통합)	기타	합계
학생 수(명)	2,819	1,820	1,797	616	1,235	2,796	689	11,772

자료: 교육부, '24.7. 기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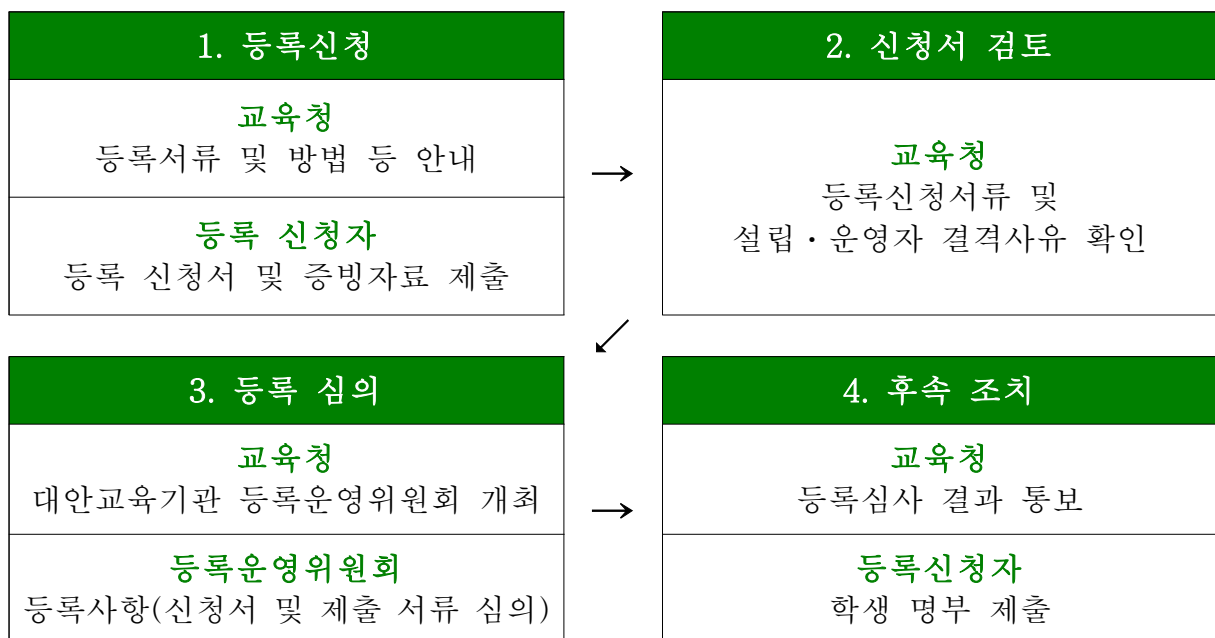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5. 4.)	267개 등록 ('25. 9.)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수업료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자율로 정함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조사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함.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고⁵⁾,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⁶⁾.

< 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적인 대안교육과 달리 외국 유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학생부담금을 받으며,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도 규제를 덜 받기 위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교육적·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 그 배경임⁸⁾.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듯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외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어 경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외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시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도 밖에 존재하는 이주배경학생 대상 모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8) 국회입법조사처,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35p, '21.6.30.

국어·이중언어 기반 교육시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대안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법상 최소 기준(시설, 안전, 학생 보호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됨. 또한 교육감 및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⁹⁾이 부여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학습권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됨.

나아가 모국어 유지, 이중언어 교육, 문화 정체성 지원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부적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일부 상업시설의 우회 등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이라는 사유를 예외 규정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표현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지역별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가 각각 구성되는 구조인 만큼, 심의 기준과 운용 방식이 시·도별로 상이해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예외 인정 범위나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우, 국제학교·어학원 등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대안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지원정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둘째, 이주배경학생의 모국어 교육 지원이 반드시 대안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⁰⁾, 2025년 기준 전국에 약 1,000명의 다문화언어 강사가 배치되어 있음.

또한, 다문화 정책학교 등에서는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교과 연계 다국어 활용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¹¹⁾, 제도권 내에서도 이주배경학생의 모국어 기반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의 취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학교 환경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 이해

10)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자료: 「2025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등 운영 도움자료」,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를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 형태로 확대될 경우, 학생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이주배경학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은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을 중점 교육 대상으로 하는 44개('24.10.)의 대안교육기관이 14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아울러,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이주배경학생의 적응과 성장보다 언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입법 취지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교육현장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

○ 경기도 교육청: 신중검토

-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서도 교육청에 등록·운영할 수 있으며, 이주배경학생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 입법 취지와 다르게 이주배경학생 교육이 아닌 외국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등록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인 기관이 확산될 경우 이주배경학생을 학교 내에서 포용하는 통합교육은 약화되고, 학교 밖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강화될 우려가 존재

문 의 처

02)6788-5184